

학술교류 협약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에 소재한 대구대학교 법과대학과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330번지에 소재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학술교류 협약은 대구대학교 법과대학과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이 상호간의 학술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인내용) 학술교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 i. 학술논문, 연구업적 및 학술정보의 교환
- ii. 학술목적의 세미나 및 학회의 공동개최
- iii. 학술도서의 교환이용
- iv. 교수의 상호 교환 강의
- v. 학생들의 학술활동
- vi. 기타 대학성숙간 학술성 발달한 사항

제3조(의무) 양 대학은 본 학술교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습득하게 된 지식, 문헌 정보 등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4조(효력발생) 본 학술교류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그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8년 3월 1일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희수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이동수

이동수